

『공장등록현황』

통계정보보고서

2021.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2.03.10.



〈차 례〉

I . 통계개요	1
II .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4
III . 통계설계	8
IV . 자료수집	19
IV . 자료수집	21
IX . 자료처리	25
VI .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29
VII .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35
VIII . 통계기반 및 개선	39
IX . 참고문헌	41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공장등록현황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개요

1. 통계명

- 공장등록현황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승인된 일반통계 : 승인번호 제399002(승인일자 2005.09.1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장설립 승인 업무
2.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참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도 산업집적법의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3. 작성방법

- 행정보고내용(공장의 인허가 승인 및 등록 현황)을 집계
- 산업통상자원부(위탁사업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https://www.factoryon.go.kr/>"를 통해 집계(보고통계)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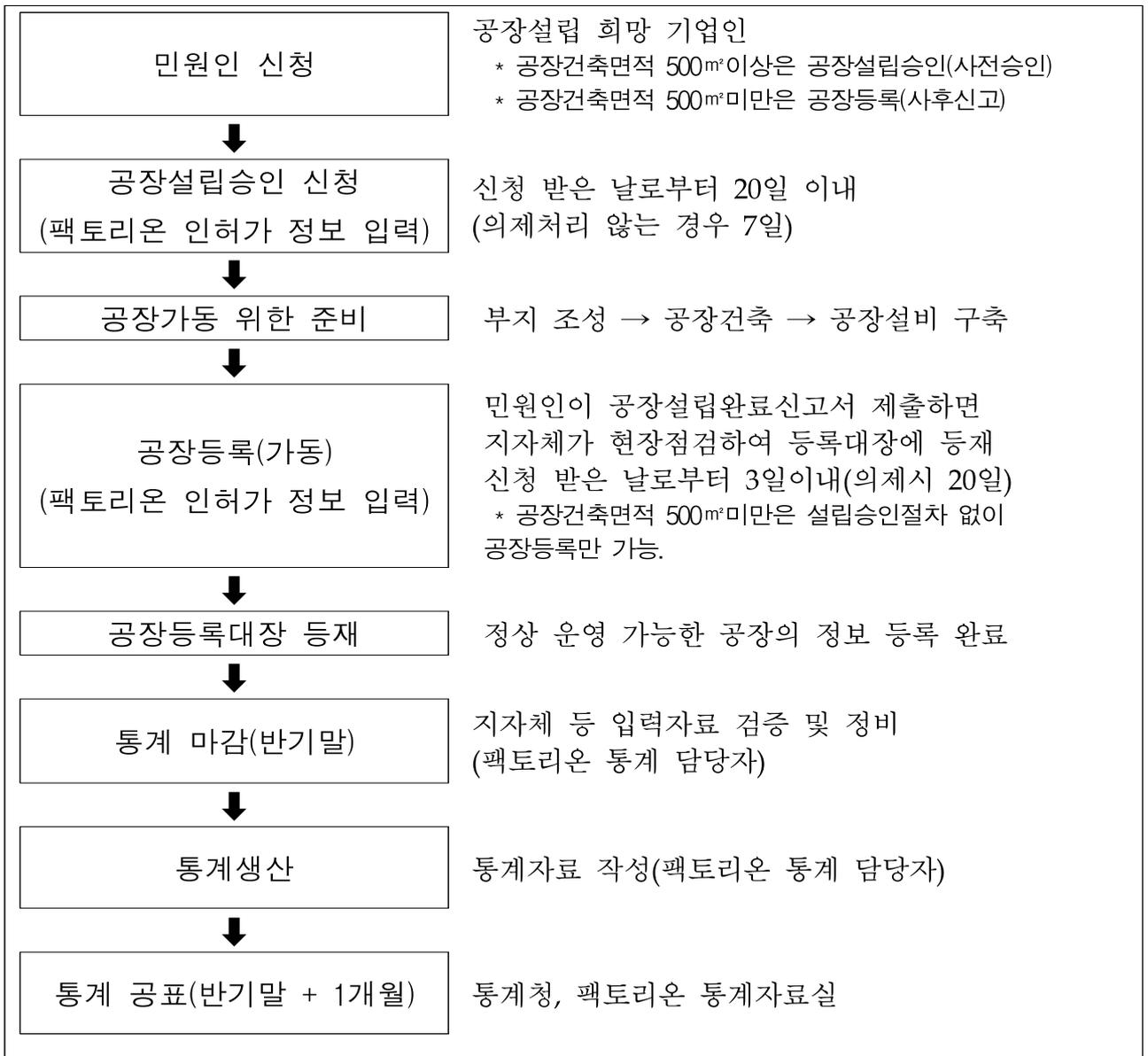
- 한국산업단지공단 / 입지지원팀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반기
- 공표주기 : 반기(경과후 2개월내)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업무처리절차



- 매년 1월, 7월 : FACTORYON에 입력되어 있는 전국의 공장등록 데이터를 분석 및 확인검토
- 매년 2월, 8월 : 인터넷 공표(국가통계포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홈페이지에 공개), 통계책자 제작·배포
- 상 시 : 정확한 FACTORYON 자료입력을 위한 전국 공장 인허가 담당자 교육 및 안내

7. 통계연혁

□ 최초개발시기 : 2005년

□ 개발 배경

-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축적된 DB를 근거한 각종 통계자료를 대국민·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조업 동향파악, 산업단지 가동현황 파악, 산업정책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

□ 변경이력

- 최초작성년도 : 2005년 공장등록현황통계 작성
- 2005년 9월 : “공장등록통계” 통계작성 승인(제399002)
- 2009년 5월 : FEMIS시스템 시범 구축사업 개시
- 2009년 10월 : 통계 명칭 및 분류 변경(공장등록통계/가공통계 → 공장등록현황/보고통계)
- 2010년 6월 : FEMIS시스템 전국 확산사업 착수
 - 온라인 집계
- 2016년 1월 : 도시지역 개별공장 통계 추가
- 2019년 8월 : 팩토리온 고도화 작업 수행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작성목적

-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 등 공장등록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동향 및 유형을 파악, 통계화하여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활용코자 함.

□ 주된 활용 분야

- 산업입지정책 및 사업에 활용
 - 산업정책 : 제조업 동향 파악, 정책기초자료, 산업단지 가동현황 파악 등
 - 산업단지 조성 : 신규 산업단지 수요 분석, 산업단지 및 필요 공업용수 원단위 산출 자료로 활용
 - 공장등록 :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광역시도 공장설립 동향 자료 제공
- 타부처 행정 기초자료
 - 지방자체 단체를 대상으로한 보통교부세 교부 기초자료, 토지 관련 지방세 과세관리, 공공입찰 절차시 참고자료(제조시설 설치 확인) 등 각종 행정 업무처리시 활용

□ 관련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 국내 유사통계, 같은 분야의 다른 통계 등 참고할 만한 통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공장등록현황 통계”는 전국 유일한 공장인허가 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를 근거하여 공장에 대한 유일한 통계로서 유사통계가 없음.
 - 서비스, 철강, 항공우주산업 등 각종 개별산업에 대한 산업동향 통계와 전체 건축물 통계는 있으나,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한정된 공장등록통계와는 별개의 통계임.
- 명칭상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통계인 “광업제조업동향조사”가 유사해 보이나, 조사대상 범위가 제조업(공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 유사함.
 -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 제조업 이외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체를 매월 표본조사(8,000여개)하여 광공업 생산지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 지수 등 경기 변동추세를 공표하는 통계임.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 및 이용자 유형별 용도

-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앙행정기관 : 산업입지정책 및 경기동향파악 등에 활용되며, 행정

자치부에서 지역별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으로 활용

- 자치단체(시군, 시군구) : 관내 공장 및 제조업 동향 및 경기동향 파악
- 학계 및 (정책)연구기관 : 산업입지분야 연구 수행
- 국민 및 기타
 - 관심지역 인허가 추이 및 공장관련 제품 납품 거래처 분석에 활용
 - 실사업자(산업단지 조성사업자, 유틸리티 제공업체, 건설업체 등)의 사업관련 자료로 활용

3. 이용자 의견수렴

□ 이용자의 의견수렴 내용 및 수용결과

-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규제 관련 법령은 50여 가지 이상이며 복잡한데 반해, 인허가 업무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이해하고 이를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장설립 관련 법령 및 시스템내 자료입력 방법에 대하여 전국 공장설립 인허가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례 집체교육과 수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음.
 - 또한, 사용자 업무편의성 제공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및 법령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여 정확한 자료 입력토록 안내
- 본 통계자료를 재가공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 보통교부세 산출시 지자체별 차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등록현황(수, 면적)을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협의에 따라 신규 통계항목으로 추가하였음.
 - 통계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통계 보고서 작성후 동일한 현황을 다시 재조사 재공표의 불편함을 개선함.
 - 또한, 일반인의 등록공장에 대한 검색 및 통계추출 및 자주 찾는 통계는 별도 자료실 운영토록 개선 완료(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https://www.factoryon.go.kr/> ⇒ 고객지원 ⇒ 게시판 / 공장설립자료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및 공장등록통계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매월 시스템을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말 사용자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공장등록통계 민간개방 서비스 및 등록 통계자료 활용도 확대 방안 모색하고 있음.
-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규제 관련 법령은 50여 가지 이상이며 복잡한데 반해, 인허가 업무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이해하고 이를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장설립 관련 법령 및 시스템내 자료입력 방법에 대하여 전국 공장설립 인허가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례 집체교육과 수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음.
 - 또한, 사용자 업무 편의성 제공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및 법령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여 정확한 자료 입력토록 안내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헬프데스크 운영하여 문의사항 및 개선사항 조치
- 업무처리 상담 및 개선을 위한 전용 상담 콜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유선 및 게시판 문의사항을 글을 통하여 조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6.2.15.>

신 설
 증 설 승 인
공장 이 전 **(신청서)**
 업종변경 변경승인
 제조시설설치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	-----	------	-------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미해당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승인 신청 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생산물		
	업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 범위)	
	공사 착공예정일		공사 준공예정일	
	규 모	공장 부지 면적(m ²)	제조시설 면적(m ²)	부대시설 면적(m ²)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분류번호	
	규 모	공장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변경승인 신청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주요 개념 및 용어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본 통계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는 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원칙으로하며, 해당 법에서 정하지 않은 개념은 타법의 정의를 준용함.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란 공장설립 승인 업무,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인허가 시스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장관련 모든 민원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주요 용어 정의
 - 신설승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13조에 의거 공장의 신설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증 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이 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 설치 : 산업집적법 제14조의3에 따라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창업사업계획승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창업자가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득하는 승인
- 조사양식(민원신청서) 용어 정의

- ① 회사명 : 사업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③ 생년월일 : 사업자가 개인이면 생년월일을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④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⑥ 공장 소재지 : 공장 및 사업장 설립 예정지의 모든 지번 기재(반드시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⑦ 지목 : 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 ⑧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용도지역이 2개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⑨ 생산품 : 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저 절단가공 등) 기재
 - ⑩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⑪ 분류번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⑫ 공사 착공예정일 : 공장설립 공사 착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건축물 착공계 제출 예정일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 ⑬ 공사 준공예정일 : 공장설립 공사 준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사용승인 예정일 기재),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일자를 기재
 - ⑭ 공장부지 면적 :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m²)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⑮ 제조시설 면적 :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건축물대장 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 공작물 면적의 합산
 - ⑯ 부대시설 면적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 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건축물 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⑰ 종업원 수 :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⑱ 기존공장 : 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시에만 기재
- 기타 용어 정의(보고서 용어)
- 규모미만 등록 :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 등록된 경우
 - 완료신고 : 산업집적법 제13조 또는 제14조의3에 의해 승인을 받은 공장이 공장건설 완료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신고하는 경우(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 부분등록 : 공장의 부분가동을 위한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적은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송부하면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하여야 함.
- 제조시설 :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 부대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토지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나 법률상 용도 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여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보고항목별 조사목적

통계자료 항목	주요 조사목적
시도별/업종별/규모별 신규 공장등록 현황	- 해당 반기에 시도별/업종별/규모별 신규로 인허가를 득하여 등록된 공장의 개수 및 면적 파악
시도별/규모/설립형태/용도지역별/연도별/고용/면적/설립형태별 등록공장 현황	- 해당 반기내 시도별/규모/설립형태/용도지역별/연도별/고용/면적/설립형태별 등록된 공장 제현황 파악
기초지자체별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등록현황	-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차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

□ 주요 개념에 대한 국내기준 비교

용어	공장등록현황 통계	국내기준과 비교
공장	제조시설, 부대시설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	- 건축허가 및 착공동계(국토부) : 건축법상 공장의 정의.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제조업소 미포함) - 사업체기초조사(통계청) :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로서의 공장(본사, 본점 이외 영업소)
공장건축 면적	각층의 연면적, 옥외공장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	- 건축허가 및 착공동계(국토부 통계)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옥외공장물 등 미포함)

1-2 적용 분류체계

□ 공장등록현황통계 항목 분류 체계

- 본 통계에 적용한 분류는 국제기준이 없어 국내 분류기준을 적용
 - 공장 소재지는 행정구역에 의한 통계청 한국 행정구역 분류 적용
 - 업종명과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 적용

구분	세부구분	통계자료항목
신규 공장승인	시도별/업종별/규모별 신규 공장등록 현황	<p>전국 지자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반기내 처리된 신규 공장 인허가 자료를 아래의 분류 기준으로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광역시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 3개 신규 공장설립승인 방법 분류 신설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사업계획승인 ○ 33개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10. 식료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4개 신규 공장등록 방법 분류 규모미만 등록, 완료신고,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등록공장	시도별/규모/설립 형태/용도지역별/연도별/고용/면적/설립형태별 등록공장 현황	<p>전국 지자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반기말 기준으로 공장 인허가 현황자료를 아래의 분류 기준으로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광역시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 3개 등록현황 분류 등록완료, 부분등록, 휴업 ○ 33개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10. 식료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3개 고용현황 분류 남자, 여자, 외국인 ○ 3개 면적현황 분류 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 8개 설립형태별 분류 일반, 창업, 국가산업단지, 일반·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p>기초지자체별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등록현황</p>	<p>기초지자체별 도시지역 개별입지내 공장의 수 및 면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개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16개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 ○ 8개 대구광역시 기초지자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 ○ 11개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중구, 동구, 남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 ○ 5개 광주광역시 기초지자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5개 대전광역시 기초지자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5개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 ○ 31개 경기도 기초지자체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강원도 기초지자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12개 충청북도 기초지자체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17개 충청남도 기초지자체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시,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군 ○ 14개 전라북도 기초지자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22개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23개 경상북도 기초지자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 18개 경상북도 기초지자체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2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제주, 서귀포 ○ 세종특별자치도(기초지자체 없음)
--	--	-------------------------------------------------------------------------------------------------------------------------------------------------------------------------------------------------------------------------------------------------------------------------------------------------------------------------------------------------------------------------------------------------------------------------------------------------------------------------------------------------------------------------------------------------------------------------------------------------------------------------------------------------------------------------------------------------------------------------------------------------------------------------------------------------------------------------------------------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서양식의 구성

- (민원인) 공장등록신청서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입주계약신청서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붙임)
⇒ 보고통계로 민원 신청한 내용이 시스템에 적재 관리되며, 별도의 보고양식이나 팩스로 송부하거나 메일로 보내지 않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양식 검토

- 보고통계임으로 법령의 양식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보고양식 검토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법규나 지침 개정을 통하여 변경됨.
- 매년 민원인 또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 등의 요구에 의해 관련 서식이 개정됨.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보고양식 변경절차

-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지침이 개정될 경우 서식 변경

□ 보고양식 변경 이력

- 조사표에서 3개 항목 추가(2007년 하반기)
 - 업종별 건축면적 현황, 용도지역별 건축면적 현황, 설립형태별 공장등록 현황
- 조사표에서 1개 항목 추가(2015년 하반기)
 -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

□ 보고양식 변경 이유

-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산출시 각 지자체별 차등 교부 근거산출에 이용되는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등록 자료를 기본 보고양식에 추가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 공장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의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창구방문 신청시 인허가 담당자가 “공장등록신청서”,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입주계약신청서” 전체 내용을 입력
- 공장등록현황통계는 해당 공장의 인허가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반기말 기준으로 마감하고, 보고대상 자료가 정리되어 제출

□ 통계작성대상

- 공장등록현황통계는 인허가 신청서 작성하는 전체 72개 항목 중 개인정보(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제외한 유의미한 소재지, 업종, 용도지역 등 19개 항목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집계
- 통계에 포함되는 공장은 공장설립승인 공장과 공장등록 공장을 구분하여 작성함.
 - 공장설립승인 공장은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는 법적의무임. 다만, 500㎡미만인 경우에도 민원인이 의제처리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설립승인 절차를 취할 수 있음.
 - 공장등록 공장은 공장이 정상 운영할수 있는 상태로, 최초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공장이 제조시설설치 완료후 관계기관의 확인을 득한후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상태를 말함

- 17개 광역시도 및 253개 지자체에서 입력된 자료를 아래의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여 집계

<용도지역별 공장등록/공장등록 면적/건축면적, 설립형태별 공장등록/공장등록 면적/건축면적, 규모별 공장등록/건축면적>	<지역별 공장규모/설립형태/업종/용도지역/건축면적/공장 소유형태 업종별 공장등록/공장등록 면적/건축면적 현황>	<지역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
전국 등록중 아래 분류 기준 ○ 3개 규모별 ○ 7개 설립형태별 ○ 33개 업종별 ○ 5개 용도지역별	17개 광역시도별 아래 분류 기준 ○ 7개 설립형태별 ○ 33개 업종별 ○ 5개 용도지역별	253개 기초지자체별 아래 분류 기준 ○ 3개 등록현황별 ○ 3개 등록현황별

□ 작성시간 내 변동사항 발생시 보완방법

-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 일부를 추출·집계하여 작성하고 있음. 만약 작성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에 맞추어 집계 가능함.

※ 작성기간 내 자료의 수정사항 발생시 조치방법

- 작성기간내 자료 내용의 변동이 발생시에는 변동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 후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자료의 수정 등을 요청

3 통계작성 개편

□ 공장등록현황통계 개선방안

-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등록현황 통계 항목을 보다 체계화하고, 자료입력시 절차 및 통계 절차를 재정비하여 공장등록 정보 제공의 형태 및 원시자료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실행계획을 마련

IV. 자료수집

1. 조사방법

조사방법 흐름도 및 설명

- 조사안내 → 조사자료 수집(전자 신고 후 내방 제출) → 분석
- 경영분석통계조사는 별도의 조사표를 배부하지 않으며, 업체에서 매년 신고하는 전기공사실적신고 시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함. 업체에 실적신고제출을 안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음

2. 조사 실시

2-1 조사업무 흐름도

- 해당내용이 있는 전기공사업체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공사실적을 전산입력 후 출력하여 해당 발주처에 확인도장을 받음.
- 확인도장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각종 입증자료(세금계산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우리협회에 제출함.

2-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매년 10월경 우리협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12월경 관내 전기공사업체에 입력 방법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개최하여 교육함. 또한 조사구 확인 및 조사 명부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체의 변경사항은 변경일로 30일 이내에 지정기관(협회)에 신고토록 되어 있어 매일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

□ 교육 관련 사진



2-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조사지침서(실적신고 제출요령)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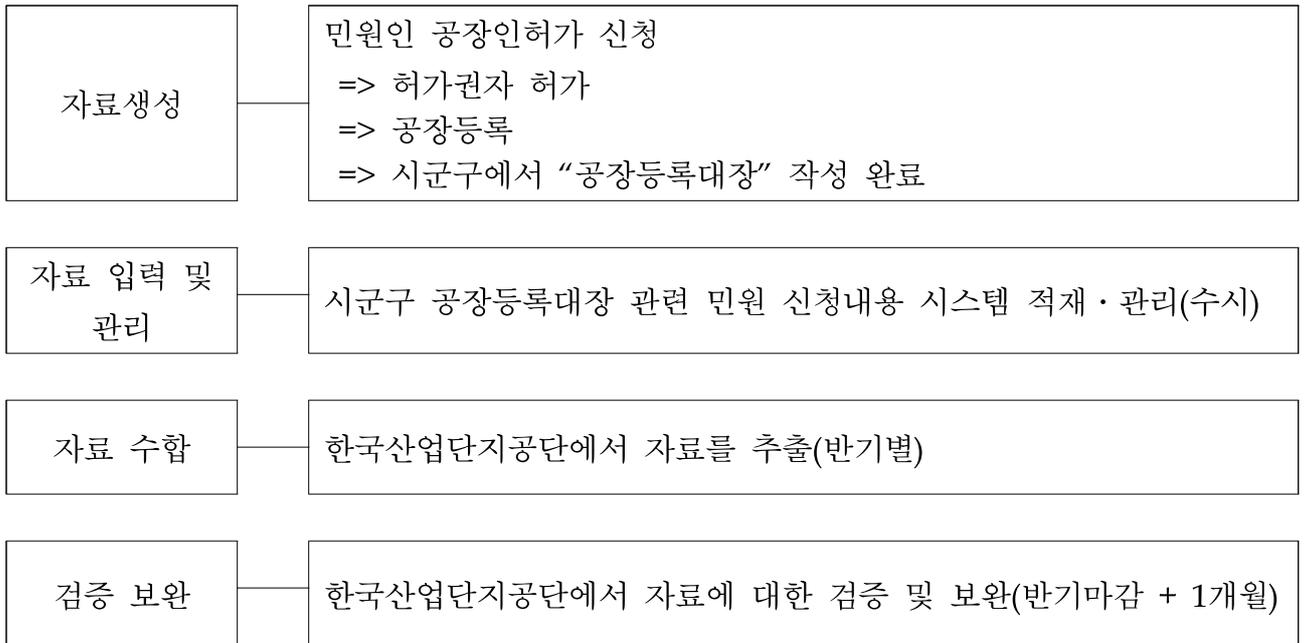
IV.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자료수집 체계

원시 자료 생성	자료 입력 및 관리	자료 집계 분석 및 공표
민원인 공장인허가 신청 => 허가권자 허가 => 공장등록 => “공장등록대장” 작성 완성	지자체는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을 기초로 공장등록대장을 시스템으로 관리	지자체에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료집계 => 오류검증 => 수정보완(지자체) => 분석 및 공표

□ 자료수집 흐름도



□ 통계작성 체계

추진단계	업 무 내 용	기관
항목 변경사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현황통계 부분 미비점 도출 ○ 지자체 자료 입력 용이성 확보방안 및 오류 최소화 방안 검토 ○ 지자체 건의사항 및 중앙부처 필요 통계항목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장인허가 및 공장등록대장 생성 및 관리(연중) 	지자체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현황통계 전국 반기 집계자료의 오류 검증 및 보완리스트 작성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을 통하여 발견한 이상치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보완 	지자체
최종검토 반영, 통계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검토 및 보완사항 반영 ○ 시도별/업종별/규모별 신규 공장등록 현황 작성 ○ 시도별/규모/설립형태/용도지역별/연도별/고용/면적/설립형태별 등록공장 현황 작성 ○ 기초지자체별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등록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최종확정 및 사이트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공장등록현황통계 확정 및 관련 웹사이트 게시 	한국산업단지공단

□ 최초 보고자 단계에서의 전산입력 및 오류 점검

- 공장등록현황통계는 민원인의 공장 인허가시 기재한 자료를 기초로 전산 입력되어 작성되며,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대한 오류는 공장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검증되고 있음.
- 민원인은 시스템에 입력된 인허가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재산권 행사 및 조달입찰 등의 제출자료임으로 필연적으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민원제기에 의해 대장이 수정됨. 이에따라 최초 보고단계에서의 전산입력 오류는 즉시 수정되고 있음.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보고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공장등록현황통계는 민원인, 공장 인허가 공무원 및 산업단지관리기관 기초자료 작성 방법 및 주요사항 전달 교육
 - 교육시 공장 인허가 관계법령, 시스템 및 공장등록현황 통계의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실시
 - 전용 헬프데스크를 통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 업무지원
- 교육 주기 : 매년 4~10회 실시
- 교육 과정명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담당자 교육
- 교육 일정 및 시간표

교육시간	내용	비고
2.5	산업집적법 이해 및 유권해석	
2	법령해석 이해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건축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5	표준산업분류의 이해	
1.5	공장설립 관련 부동산 권리관계 이해(민법)	
3	팩토리온 시스템 운용실무	

- 교육교재 및 매뉴얼 : 별도첨부

□ 보고단계에서 의문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 의문사항을 사이트내 질의응답 및 유선으로 접수받아 보완 조치
 - 시스템에 통계 집계이 불일치하는 경우 유선을 통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후 보완 조치

3. 현장관리

□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조치절차 및 방안

- 공장 인허가 시점에 시스템에 입력됨으로써 기본자료가 생성되어 수시 관리되고 있으며 보고자료는 반기말 기준으로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음. 따라서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대한 문제는 발생치 않음.
- 공장등록현황통계는 계속 통계임으로 매반기 익월 16~25일 마감절차에 의거하여 점검 및 보완을 하고 있음.

□ 기입요령 및 기입시 유의사항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에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 통계자료 입력시 요령 : 붙임의 매뉴얼 참조

□ 작성양식 견본

- 공장 인허가 관련 민원내용이 원본 그대로 시스템에 입력됨.
- 일부 견본 : 붙임)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주요 질의응답·오류사례 추적 및 관리방법

- 주요 질의응답은 업무처리 전용프로그램 게시판의 질의응답 및 공무원 교육시 설명과 유선연락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착오입력 방지를 위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음.

□ 보고양식의 미기재, 부실기재 등이 있는 경우 처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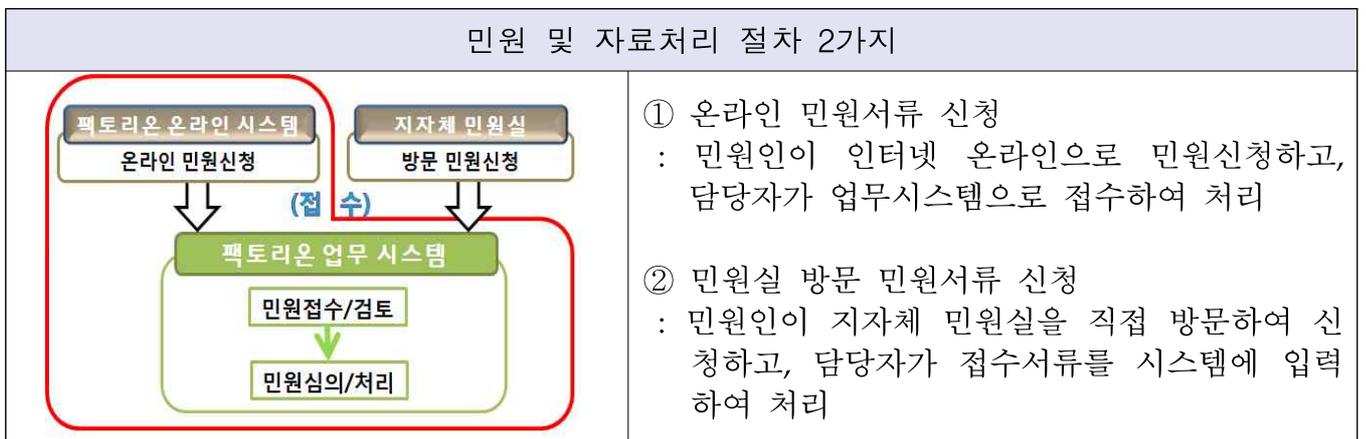
- 필수항목 값의 누락사항 발생할 경우에는 시스템 입력시 저장이 되지 않고, 수치의 불일치 또는 집계과정에서 전기대비 큰 폭의 변동시 유선연락을 통하여 조치

IX.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및 코드체계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www.factoryon.go.kr)은 oracle을 기반으로 출력형식은 엑셀 및 한글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각 항목에 코드를 부여하여 통계항목을 입력함.
(입력화면에서 해당항목의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
- 공장의 업종, 설립형태, 설립구분, 사업구분, 용도지역, 공장유형 등으로 구분



① 온라인 민원서류 신청 (온라인 전용)	② 민원실 방문 민원서류 신청 (업무처리 전용 프로그램)
	

□ 자료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방법

- 공장등록현황통계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www.factoryon.go.kr)에 입력하여 작성하고 있음.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www.factoryon.go.kr)에 입력시 오류점검
 - 지자체 등 인허가 담당자가 시스템에 자료 입력시 필수항목 누락시 자료가 저장되지 않게 되며 이를 통해 오류 확인
 - 오류메시지 미발생시 정상마감 처리됨.
- 입력매뉴얼 : 별도붙임
(최초 입력자료는 공장인허가 자료이므로 인허가 대상자 교육시 활용)
- 자료입력 교육 일정 및 방법
 - 교육계획 : 지자체 등 공장인허가 담당자 대상 관련법령 교육시 시스템 운용 교육 병행
 - 교육대상 : 지자체 공무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 등
 - 교육회수 : '16년 기준 4회 실시
 - 교육내용 : PPT 자료 및 책자를 통해 자료입력 방법 등 교육 및 실습교육을 병행함.

2. 자료내검

□ 공장등록현황통계 자료집계 절차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www.factoryon.go.kr)에 지자체 및 산업단지 관리공단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반기별 공장등록현황을 집계
 - 지자체 및 산업단지 관리공단 담당자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로그인
 - 소속 지자체별 조회(인허가 권한 부여 지역 및 산업단지 현황을 확인 가능)
 - 접속 후 통계관리 페이지로 이동하여 기간을 선택후 집계를 실시
 - 접속 후 통계구분을 각각 조회하여 통계상 오류 유무를 확인 : 현장내검
 - 집계된 통계 수치가 문제가 없는 경우 반기내 통계를 마감함.
 -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수정후 재집계 및 마감 진행
(마감 후 통계 수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집계 필요)

- 시스템에서 마감이 완료된 자료를 다운받아 자료 내검후 보완자료를 자치단체에 전달
 - 전기 지표와 비교하여 기초지자체 별 공장수, 건축면적 등 모든 통계치 증감값의 범위가 약 200%를 초과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보완사항 수정 요청
 - 보완사항이 수정된 지자체는 공장등록현황통계 재마감
 - 재마감된 공장등록현황통계 자료를 다시 내검

□ 공장등록현황통계 내검요령

- 기초지자체별 공장등록현황(주제별)
 - 253개 자치단체 구조별 합계 값과 각 광역시도의 주제별 합계 값의 일치 여부 확인
(확인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시스템의 각 주제별 화면 확인 및 엑셀 등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상값 수작업 확인)
 - 특히 도시지역 개별입지의 공장 통계값의 반기별 증감이 200%이상 초과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통계 기초자료 점검
(확인방법 : 시스템 팝업 처리하여 기초 지자체별 등록공장수와 면적을 재확인 받음)

□ 집계된 자료를 통계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 내용

-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통계표 형태로 집계하고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됨.

- 집계된 자료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www.factoryon.go.kr)에 저장되어 반기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통계표 작성

- 최종 취합된 253개 자치단체의 행정자료 17개 광역시도로 취합 통계표 작성

3. 무응답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인허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집계되는 보고통계임으로 무응답(불응, 부재, 응답거부 등) 사유가 발생치 않음.
- 다만, 일정 면적(공장건축면적 500m²)이상 임에도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는 무응답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적발시 산업집적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됨(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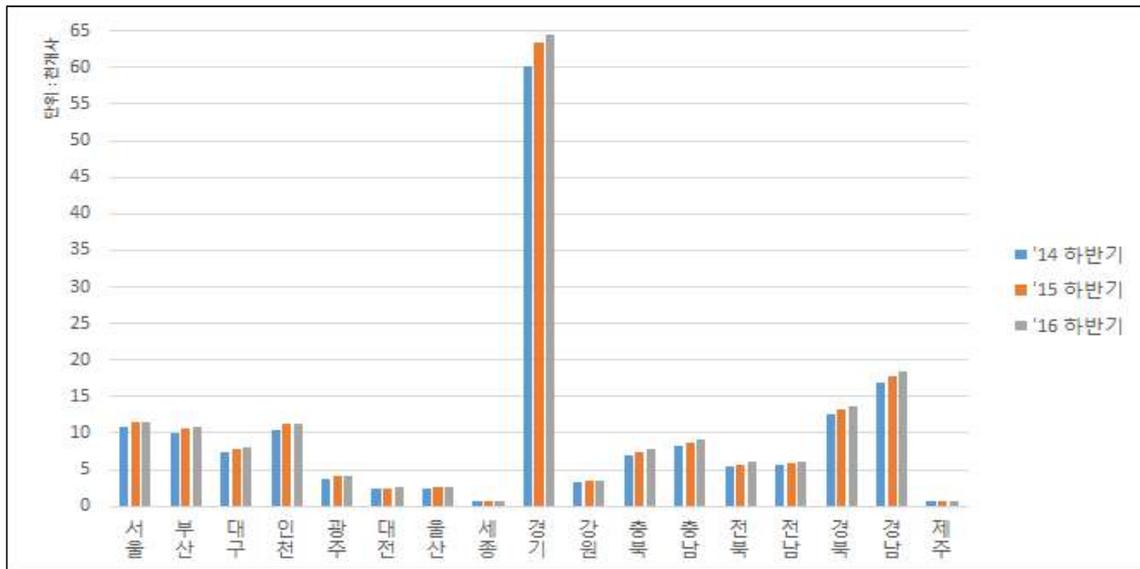
-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공장등록현황통계는 담당자는 통계자료 작성시 전기 자료를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함. 전기 자료와의 오차가 일정범위 이상인 경우 다시 검토하여 재마감 하도록함.
 - 전기 지표와 비교하여 값의 범위가 약 200% 초과되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재확인 또는 보완사항에 대하여 수정 조치함.

VI.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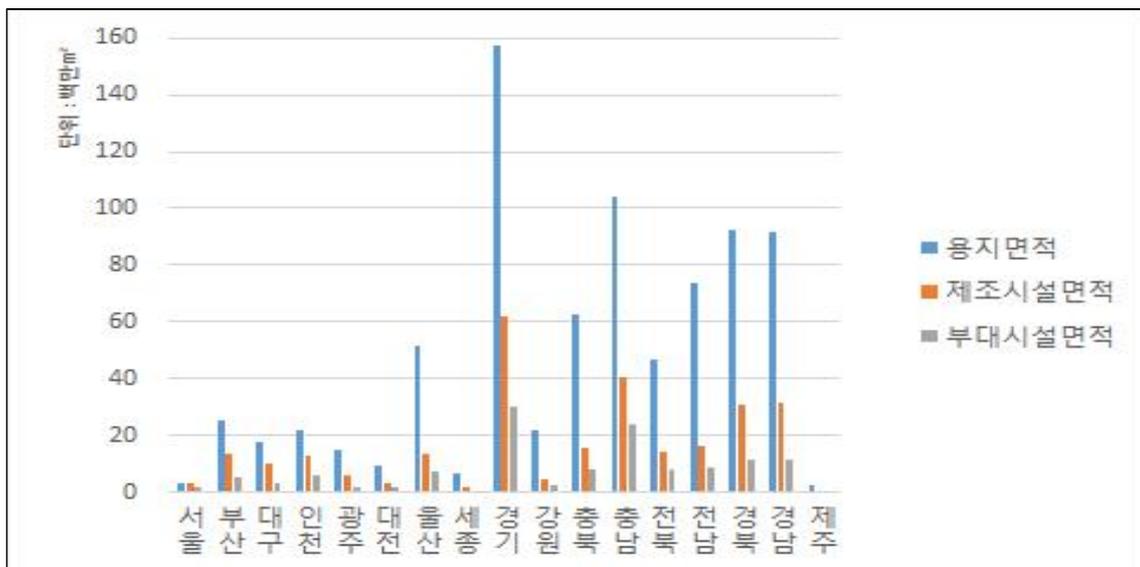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장등록현황통계 공표자료의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
 - 2017.2.3일자 공장등록현황 통계 보고자료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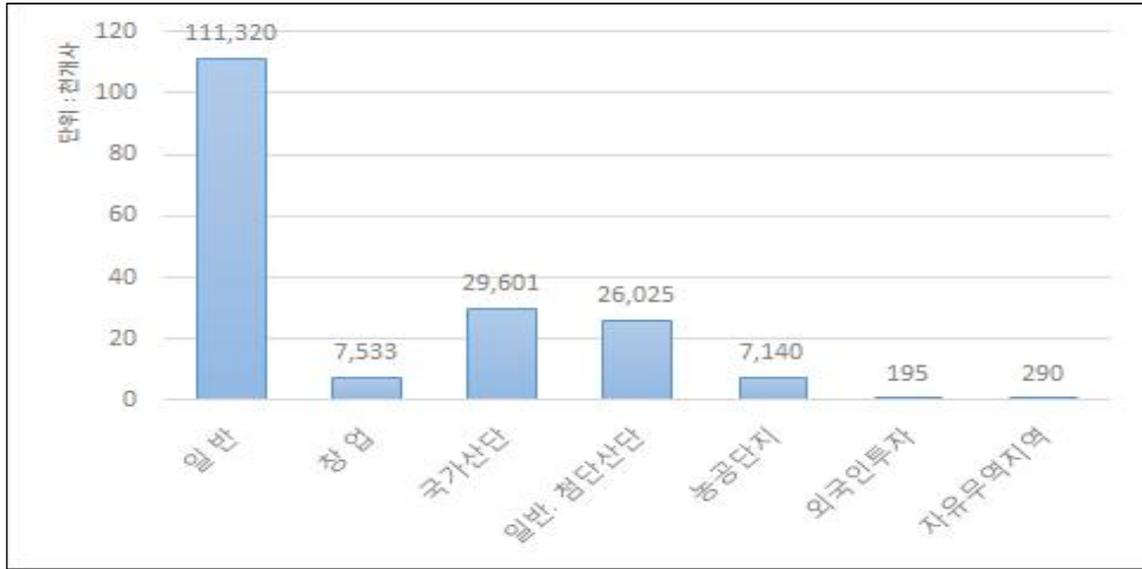
〈 연도별 공장등록 현황 〉



〈 지역별 면적 현황 〉



〈 설립형태별 공장등록 현황 〉



〈 연도별 공장등록 현황 〉

구 분	'14 하반기		'15 하반기		'16 하반기	
	공장수	비율(%)	공장수	비율(%)	공장수	비율(%)
서울특별시	10,808	6.4%	11,528	6.5%	11,545	6.3%
부산광역시	10,069	6.0%	10,693	6.0%	10,962	6.0%
대구광역시	7,457	4.4%	7,748	4.4%	8,018	4.4%
인천광역시	10,453	6.2%	11,393	6.4%	11,278	6.2%
광주광역시	3,795	2.3%	4,156	2.3%	4,250	2.3%
대전광역시	2,400	1.4%	2,474	1.4%	2,656	1.5%
울산광역시	2,457	1.5%	2,619	1.5%	2,711	1.5%
세종특별자치시	706	0.4%	727	0.4%	735	0.4%
경 기 도	60,174	35.8%	63,491	35.7%	64,514	35.4%
강 원 도	3,316	2.0%	3,522	2.0%	3,596	2.0%
충청북도	6,934	4.1%	7,369	4.1%	7,797	4.3%
충청남도	8,223	4.9%	8,731	4.9%	9,176	5.0%
전라북도	5,382	3.2%	5,761	3.2%	6,014	3.3%
전라남도	5,724	3.4%	5,973	3.4%	6,106	3.4%
경상북도	12,582	7.5%	13,180	7.4%	13,712	7.5%
경상남도	16,982	10.1%	17,865	10.0%	18,359	10.1%
제주특별자치도	664	0.4%	679	0.4%	675	0.4%
합 계	168,126	100%	177,909	100%	182,104	100%

□ 통계표 등 이용시 주의사항

□ 공장설립관리정보망(FactoryOn)

- 공장관련 제반업무의 온라인을 통해 업무를 표준화하고 기업중심의 현실성 있는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
- 전국 273개 지자체 및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331개 기관이 사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의거 인·허가 및 관련 사항 변경시, 산업용지 분양공고시 FactoryOn에 입력토록 규정되어 있음.
-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 민원업무 처리시 FactoryOn를 통한 실시간 증명서 열람 가능

□ 유의점 및 용어 정의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신설승인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13조에 의거 공장의 신설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제조시설 설치승인 : 산업집적법 제14조의3에 따라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창업사업계획승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창업자가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득하는 승인
- 규모미만 등록 :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이 등록된 경우
- 완료신고 : 산업집적법 제13조 또는 제14조의3에 의해 승인을 받은 공장이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신고하는 경우(공장등록)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보고대상 기간/시점과 공표시기

- 보고대상 기간 : 매반기(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 보고기간 : (반기) 2월 1일~15일, 8월 1일~15일(자료보완 여부에 따라 변동가능)

□ 공표 시기

○ 인터넷 : (반기) 익익월 20일

2-2 공표일정

□ 통계공표 일정 및 공표방법

○ 공표일정 게시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 고객지원 ⇒ 공장설립자료실
<https://www.factoryongo.kr/>

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첨부	조회
360	기타자료	(2022.02월말기준) 공장등록통계	팩토리온 운영자	2022-03-07	🔒	33
359	기타자료	(2022.02월말기준) 전국17개(10인이상)시도별,업종별 용지제조부대면적현황	팩토리온 운영자	2022-03-07	🔒	15
358	기타자료	(2022.02월말기준) 산단공관협단지세 입주업체리스트	팩토리온 운영자	2022-03-07	🔒	37
357	기타자료	(2022.02월) 산단지세 신규입주계약업체리스트	팩토리온 운영자	2022-03-07	🔒	12
356	기타자료	(2022.02월말기준) 전국(개별,계합)입주업체현황	팩토리온 운영자	2022-03-07	🔒	29
355	기타자료	(2022.02월말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현황	팩토리온 운영자	2022-03-07	🔒	57
354	기타자료	(2022.02월말기준) 전국등록공장현황	팩토리온 운영자	2022-03-07	🔒	41
353	공장설립자료	2021년도 하반기 전국공장등록 현황 보고	유연정	2022-02-25	🔒	77
352	기타자료	(2022.01월말기준) 공장등록통계	팩토리온 운영자	2022-02-10	🔒	211
351	기타자료	(2022.01월말기준) 전국17개(10인이상)시도별,업종별 용지제조부대면적현황	팩토리온 운영자	2022-02-10	🔒	51

*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 : 공표시기 => 작성기준월 익익월

- 반기별 승인통계 이외도 월별

○ 공표방법

- 인터넷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http://www.factoryon.go.kr>)
-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보공개(<http://www.kicox.or.kr/home/gvrn/publicData>)
- 통계자료집(책자) : 익익월 발간
(자료집게시 : 팩토리온 자료실 <https://www.factoryon.go.kr>)

공표된 공표 일정과 실제 공표시기(인터넷공표 기준)

구분	공표계획	공표 자료명	실제공표시기
2015년 하반기	익익월말	2015년 하반기 공장등록현황	2016. 1. 22
2016년 상반기	“	2016년 상반기 공장등록현황	2016. 7. 27
2016년 하반기		2016년 하반기 공장등록현황	2017. 2. 10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매반기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됨.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보고시기 등 매반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3-2 시계열 비교성

시계열 단절 유무

- 시계열 단절 없음.

3-3 국가간 비교성

외국에서 동일 목적의 통계

- 공업통계연감(UN, International Yearbook of Industrial Statistics)
 - 세계 제조업 사업체 수와 고용인력 수를 파악하여 현재 제조업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
- 제조업 조사(일본, Census of Manufacture)
 - 격년 주기(끝자리가 0, 3, 5, 8년도)로 제조업체 수와 고용인력 수 등을 파악하여 현황을 파악하는데 활용

4. 일관성

4-1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잠정치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음.

5. 통계활용 실태

공표자료 중 세부 항목에 대해 연간 300여건 추가 자료 회신

Ⅶ.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통계작성 절차별 문서화 현황

- 통계작성 기본계획 : 없음
- 업무편람 : 붙임 업무편람
- 자료수집 방법 : 시스템을 통한 자동 집계
- 자료입력/내검 지침서 : 붙임 업무편람
- 현장조사관리 : 시스템을 통해 집계됨으로 해당없음
- 공표자료 제공 방법 : 관련 웹사이트에 등재, 책자 발간

〈 공표자료 제공 〉

- 공표일정 게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 공공데이터개방
<http://www.kicox.or.kr/home/gvrn/publicData>
- * 통계설명자료(<http://meta.narastat.kr>)
- 인터넷 자료 게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http://www.factoryon.go.kr>)
 -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보공개(<http://www.kicox.or.kr/home/gvrn/publicData>)
- 통계자료집(책자) : 익익월 발간
 - 자료집 게시 : 팩토리온 자료실 <http://www.factoryon.go.kr>
 - 내용 : 해당반기의 신규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건수, 전체 공장등록 건수 및 지역별·업종별·용도지역별·규모별 공장등록건수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통계서비스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통계자료
 - <http://kosis.kr>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 통계자료
 - <http://www.factoryon.go.kr>

-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보공개 : 통계자료
 - <http://www.kicox.or.kr/home/gvrn/publicData>
- 연보 제공(연보게시)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http://www.factoryon.go.kr>)

2-2 연락처 정보

□ 공장등록현황통계 담당자 정보

- 통계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지원팀
 - 담당자 : ○○○
 - 이메일 : factoryon@kicox.or.kr
 - 전화번호 : 070-8895-7266

2-3 ~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 통계메타 DB
 -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http://www.factoryon.go.kr>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 <http://www.kicox.or.kr/home/gvrn/publicData>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보공개)
- 통계설명자료
 - KOSIS(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포괄적 설명자료 수록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http://www.factoryon.go.kr>) : 관련용어, 작성방법 등 설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보공개(<http://www.kicox.or.kr/home/gvrn/publicData>) : 관련용어, 작성방법 등 설명
- 품질보고서 : <http://kostat.go.kr/quality>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공장등록현황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요구 및 제공방법
 - 공장등록현황
- 구입 소요시간 : 즉시
- 구입 비용 : 무료
- 자료제공 포맷 : 엑셀
- 자료 제공 레이아웃 : 공장등록현황 주요항목 나열
- 미제공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 개인정보
- 제공 관련 인터넷 주소 : <http://www.factoryon.go.kr>
- 메타데이터 보유년도 : 2005년
- 마이크로데이터 보유년도 : 2016년
- 마이크로 관리 유형
 - 관리 DB : Oracle
 - 관리 File : 엑셀
- 미공표 집계자료 제공 기준 : 산업집적법, 자체 정보공개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 기타사항
 - 2005년을 기준으로 메타데이터의 항목이 변동됨.
 - 2016년부터 실시간 각종 현황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관련 내부 규정 : 마련되어 있지 않음.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자료의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번호

- 수집과정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포함하여 신청권자가 직접입력하고 있음. 자료 접근은 민원신청권자 및 허가권자만 접근 가능토록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구현됨.
- 처리자료과정 :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 담당자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집계보고하고 있음.

- 자료보관과정 : 민원신청 원시자료는 민원신청권자 및 허가권자만 접근가능하며, 집계된 통계자료는 개인식별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응답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음.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는 취합자료임으로 응답자 식별 불가능

- 공표자료는 개인정보 비밀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표
-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는 개인정보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공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원시자료는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 서버에 보관되며, 시스템의 이중화를 통해 접근을 통제됨. 또한, 주기적으로 백업파일을 형성하여 유출, 유실시 훼손에 대비하고 있음.

(외부에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함.)

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부서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지원팀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직급	인원	구체적인 통계업무	근속연수
팀장	1명	총괄	1년
담당	1명	기획·분석·결과공표	2년
외부 시스템운영사	3명	시스템운영 및 자료처리	4년

○ 추진체계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위탁기관으로서 공장 통계관련 시스템의 유지관리, 자료처리, 자료 집계 담당
- 매년 외부 시스템 운영사를 선정하여 시스템의 유지관리 등 담당

최근 3년간 통계관련 이수내역(교육기관, 과정명, 참여인원수)

- 통계청(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교육) : 1명(2014년 이수) 1회
- 통계청(자체통계품질진단 담당자교육) : 1명(2015년 이수) 1회
- 통계청(통계작성기관 설명회) : 1명(2016년 이수) 1회

2. 사업예산

전체 및 주요 항목 또는 활동별 사업예산

- 공장등록현황통계에 대한 사업예산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공장등록현황통계는 보고통계로서 시스템을 통하여 집계되며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

예산의 증액 필요성, 절감 가능성

- 공장등록현황통계에 대한 사업예산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별도로 증액 편성 필요성이나 절감 가능성에 대한 검토할 수 없음.

3.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입력, 처리, 집계 분석용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DB를 구축하여 관리중임.
- 오라클(DB)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항목개선, 내검 프로그램 개선, DB정보 활용을 위한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개선 계획 중
- 시스템명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 관리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위탁관리)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자료입력과정 개선
- 통계작성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민원인의 공장인허가 민원신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해당 시스템의 대민홈페이지 개편(2016년)하여 자료입력 접근성 및 절차 및 내용을 보다 손쉽게 이용토록 개선

5. 외부 개선의견 및 조치사례

- 기초지자체별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등록현황 통계 추가
- 보통교부세 차등 부과 기준을 위해 기존 통계보고 이후 별도로 집계·보고하는 통계항목인 “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등록현황”을 2016년부터 추가로 본 통계보고내 포함하여 공표

IX.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해외 분류 방법 등

- 공장등록현황 통계내 적용되는 설립형태, 용도지역 등은 우리나라의 공장인허가 행정상의 용어임으로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이 없음.
- 다만, 본 통계에 활용되는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13년)기준을 따르며, 이는 1963년부터 유엔(UN) 통계청이 작성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에 맞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정, 사용해 오고 있음.
-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istic-4.asp>

2. 동일통계 외국자료

해외 유사통계 현황

- 공업통계(UN, International Yearbook of Industrial Statistics) :
<http://www.unido.org/resources/statistics> 관련책자 자료를 주문하여 받음.
- 제조업 조사(일본, Census of Manufacture) : <http://www.meti.go.kr/statistics/index>

3. 기타 문헌

공장등록현황 통계 관련 연구문헌 등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국토연구원,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강호제, 2011
- LH공사,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 연구, 2010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아파트형공장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김군수, 2009